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가단5070486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7,559,965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23.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22. 1. 13. 고등학교 후배인 피고로부터 C을 소개받았다. 피고는, C이 자기가 잘 아는 후배인데, D대를 나와 주식회사 E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며, C이 인천 송도에 아파트를 샀는데 등기비용(취득세비용 포함)이 없어 그러니, 그 등기비용 7,000만 원을 C에게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라고 하면서, C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는 C이 변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고, 같은 날 C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21. 3. 13., 이자 월 1.5%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3) C은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차용 당시 취득하고 있던 인천 송도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지 불과 3개월이 되기도 전인 2022. 4. 6.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며, 현재는 무자력 상태이다.

4) 원고는 위 대여 전에 토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세 421,634,980원을 부과받은 상태였는데, 그 분납기한이 2022. 3. 15.까지로 지정되어 있어 세금을 납부하려고 일시 보관하고 있던 돈 7,000만 원을 위와 같이 대여해 주었다. 원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5)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는 다음과 같은 C의 차용금 잔액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① 원금: 70,000,000원

② 이자: 12,151,232원(2022. 3. 14.부터 2023. 2. 28.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③ 국세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2,578,000원(2022. 6. 30.까지)

④ 국세납부지연가산세: 3,726,800원(2022. 7. 1.부터 2023. 2. 28.까지 242일간, 1일 15,400원)

⑤ 추심금(일부 변제금): 5,279,880원(2022. 9. 13.자)

⑥ 추심금(일부 변제금): 5,616,187원(2023. 1. 16.자)

⑦ 합계: 77,559,965원{=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C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등록세가 없으니 가능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화로 부탁한 사실만 있고, 그로부터 20여일 후 원고로부터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원고가 대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인정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피고가 C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가 2023. 2. 21. 전화로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갑 제4호증(녹취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가 금융감독원에서 국장의 직위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뢰가 남달랐다는 점 외에는 특별히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남다른 신뢰관계 때문에 원고의 직업이 법무사임에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C이 D대를 나왔다는 C 본인의 말과 기업에서 중요 직위에 있다는 말 등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원고의 전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을 원고에게 최초로 소개할 때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누구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설령 피고가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금전 대여시에는 보증인이 있을 경우 그 보증인으로부터 서면을 받는 것이 보통이고, 특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이와 같은 조치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뢰와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부과된 국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구체적인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그 당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고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근